

영등포구의회  
제155회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0. 9. 7.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李 憲 永

#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5호로 2010년 8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·처분 기준」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이를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2에 정한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에 일반재산의 대부료 요율을 1,000분의 10이상으로 하는 규정 신설(안 제27조제4항제6호).
-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·처분 기준」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면적 범위를 상향 조정(안 제38조제4호).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32조제1항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31조 제1항,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·처분 기준」의 매각기준으로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.

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.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의 2009년 1월 8일 및 2010년 4월 22일 개정된 사항과 2009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·처분 기준」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- 안 제27조제4항제5호에 기존에 일반재산 대부요율 1,000분의 10 이상을 적용하던 “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”을 “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”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함.
- 안 제27조제4항의 대부요율 1,000분의 10 이상을 적용하는 대상에 “제6호.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”를 신설하여 수혜대상을 확대.
- 안 제38조제4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단의 토지면적 범위 등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·처분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긴급재원을 확보하며, 고질적인 민원해소 등을 위하여 상향 조정.
  - 특별시·광역시·시지역 :  $1,000m^2 \Rightarrow 1,500m^2$
  - 그 밖의 지역 :  $2,000m^2 \Rightarrow 3,000m^2$
- 이 조례안은 「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와 행정안전부의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·처분 기준」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해당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도 의견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됨.

# 관 계 법 령

## 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32조(대부료)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.

## 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31조(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)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.

## 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·처분 기준

(행정안전부 지침)

### 나 매각 기준

3)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

나) 일단의 토지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,500㎡, 시이외의 지역에서는 3,000㎡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·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

※ 일단(一團)의 토지 : 단독 필지 또는 서로 연접하여 하나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일련(一連) 일반재산 토지. 다만,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공유지분 토지는 제외